

『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 회 식

나. 제안이유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시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(안 제12조제2항제2호)
 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: 50퍼센트 감면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- 본 『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임.
- 검토 결과,
 -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저출산 시대 출산,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
 -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국가보훈처의 ‘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’에 따라 의무 감면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 -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과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,

- 사용료 감면을 통해 시설활성화 및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